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5.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6. 5.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최 두 열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5.12.31)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골자

-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4조의7)
 - 고액·상습체납자(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체납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정비(안 제21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을 50%에서 토지 및 건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 100%, 주택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 적용
-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 명문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5. 12.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14조의7를 신설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정비한 안 제21조에서는 현행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재산세(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명문화 했음.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12.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1억원이상을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5.12.31)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 가.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4조의7)
- 고액·상습채납자(채납 발생일로부터 2년, 채납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 및 채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정비(안 제21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을 50%에서 토지 및 건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 100%, 주택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 적용
- 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 명문화

3. 개정근거

- 가.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
- 나.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6. 3. 2 ~ 2006. 3. 2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4. 10)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로 한다.

제14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7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시행 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2호 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p> <p>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p>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여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비율을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p>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